

의안 번호	1496	【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8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2. 6.(목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12687호, 개정 2014. 5. 28.)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. 12. 31.자로 만료되므로,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 명시(안 제10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인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로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거법규

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부 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